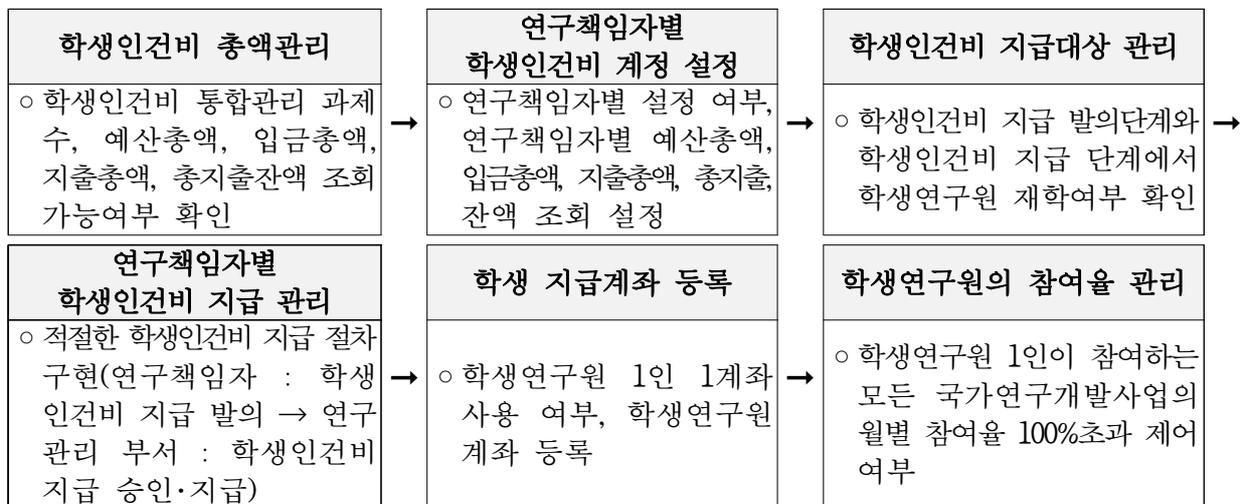
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,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'09년부터 도입·시행
- 시기 : 2016. 9월 ~ 현재
- 관련법령 또는 근거 :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-61호)
- 관련부서 : 연구지원팀

2. 업무흐름도



3. 주요내용

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
-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-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연구원 1인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
- 본 과제 종료되는 연도의 12월말까지 학생인건비 이관액의 60%이상 집행
 - ※ 월지급 상한액(참여율100%): (학사) 1,000천원, (석사) 1,800천원, (박사) 2,500천원